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 안 설명

- □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!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□ 서울시는 호수밀도는 1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 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,
- □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,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,
- □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

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가구수를 1동으로 산정하고자 하오니,

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
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